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1. 4. 19.  
총무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2001. 4. 1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정 상 택

#### 가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고시 제2000-15호로 개정·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에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동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기준을 시달함에 따라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○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시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.

- 1건당 1,000원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 저당등록(말소)신청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-15호로 2000. 8. 31일 개정· 고시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에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,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3조 관련 별표 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” 의 제 1호중 “ 자” 목란중 “ 자동차에 관한 증명” 을 “ 자동차 및 건설 기계에 관한 증명” 으로 개정하고, 건설기계 저당등록(말소)신청 수수료를 1건당 1,000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자치구별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2001. 1. 12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권고안과 타· 시도 수수료 징수실태를 비교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○ 질의요지(윤한호 위원) : 우편민원의 경우 수수료징수에 우편요금이 포함되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창수 건설관리과장) : 우편요금은 미포함.

○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수수료징수조례 개정근거인 민원 사무처리기준표가 관보로 2000년 8월 31일자 인데, 지금 4월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?

○ 답변요지(김창수 건설관리과장) : 건설기계저당법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시장의 조례개정권고안을 2001년 1월 13일 통보받고 2월 2일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세무1과에 의뢰하였음.

○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) : 비용 원가분석은 하였나?

○ 답변요지(김창수 건설관리과장) : 원가분석결과 건당 1089 원 99전이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고시 제2000-15호로 개정·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동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일괄기준을 시달함에 따라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 개정 골자

- 건설기계저당등록 또는 말소 신청시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  
: 1건당 1,000원

### 3. 개정근거

- (1) 지방자치법(2000.1.12 법률 제6115호) 제128조 및 제130조
- (2) 건설기계저당법(1997.12.13 법률 제5454호) 제5조
- (3)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(1993.12.31 대통령령 제14064호) 제2조
- (4) 민원사무처리기준표(2000.8.31일 관보)

### 4. 조 례 (안) : 별 첨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01.3.5 ~ 3.25)결과, 특기할 사항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관련, 별표 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”표의 제1호중 “(42종)”을 “(43종)”으로 하고, 동호의 “자”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종 목	단 위	수수료액	비 고
자.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증명			
(1) 자동차제증명	1건	1,000원	
(2) 건설기계저당등록(말소)신청	1건	1,000원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(안)			
<별 표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42종)				<별 표>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-----(43종)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
가.~아. (생략)	(생략)			가.~아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
자. 자동차에 관한 증명				자.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관한 증명			
(1) 자동차제증명	1건	1,000원		(1) 자동차제증명	1건	1,000원	
				(2) 건설기계저당등록 (말소)신청	1건	1,000원	
차.~하. (생략)	(생략)			차.~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
2. 생략				2. (현행과 같음)			